

# 제조물책임법의 전개와 소비자보호\*

심재한

영남대 교수, 상법

## < 目 次 >

- I. 제조물책임의 의미
- II.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례
- I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 IV. 결 어

## I. 제조물책임의 의미

산업화와 대량생산체제라는 용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이미 진부해진 개념이 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용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FTA 등을 통한 국제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전세계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경없는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전에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제품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을 보유한 제품의 전세계적인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증가한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해법의 하나는 생산비의 절감이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생산비 감소를 이유로 값싼 노동력과 낮은 품질의 원료만을 추구하거나 신제품의 출시에 급급하여 기술개발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결함있는 제품의

\* 심사위원 : 강현, 조지현, 이동승

생산과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전통적인 방법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전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성이 높지 않고, 또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은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뜻한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제조물의 제조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는 제조자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하여 수입업자·상표(실시)권자·유통업자·부품생산자·설계자 등 결함이 있는 생산물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산자책임<sup>1)</sup>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도 있었으나,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운용양상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현실적인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례

### 1. 미국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법리는 1960년대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정립되는 것을 기초로하여 그 이후 각 주의 법원이 이를 따르는 형태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과실·계약당사자관계원칙의 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제조자에 대해 엄격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엄격책임<sup>2)</sup>이란 제조자가 상품생산의 준비나 판매과정에

1) 김형배, 생산자책임, 민법학연구, 458면 이하.

2) 엄격책임의 효시로는 일반적으로 1868년 영국에서의 *Rylands v. Fletcher*사안에 대한 귀족원(House of Lord) 판결을 든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극히 위험한 활동

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제조자가 과실없이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sup>3)</sup>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업격책임을 적용한 것은 1944년의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사건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 1963년의 *Greenman*사건<sup>4)</sup>에서 확립되었다. *Greenman*사건은 다목적 전동공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선반에 물려있던 나무조각이 갑자기 기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마를 강타함으로써 중상을 입게 된 소비자가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결과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업격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미국법률협회(ALI)는 1964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에서 판례의 원칙을 수용하였고, 이후 제조물책임법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위기를 겪고나서 미국에서는 판례에서도 제조물책임 원칙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시작된 미국법률협회(ALI)의 노력에 의해 1997년 5월에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Law Torts, Product Liability)를 확정하였다.<sup>5)</sup>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제조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책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결함개념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 대신 세가지 유형의 결함으로

(activities which are extremely dangerous)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김상용, 불법행위법, 396-398면.

- 3) 과실책임에서는 제조물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제조자의 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업격책임은 책임의 초점을 피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제조물 자체에 두고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업격책임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원래 의도된 대로 제조물을 사용하던 중에 그 제조물의 설계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은 불안전한 것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인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업격책임에서는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4)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 2d 57, 377 P. 2d 897, 27 Cal.Rptr. 697(1963).
- 5)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391면 이하.

그 유형을 구분하고, 설계결합이나 경고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 2. 유럽연합(EU)

유럽의 경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개별회원국 각각의 전통적인 책임법리로 해결을 피하여 왔다. 그러나 결합제품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EU 공동체시장 내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EU의 중요 가치기준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제품결합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를 회원국마다 서로 다르게 보호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결합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는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sup>6)</sup>이 제정되었고,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가 농산물과 축산물에 확대된 새로운 EU지침<sup>7)</sup>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지침의 제1조에서는 “제조업자는 그 제조물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이는 EU 지침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지침 전문에서는 제조사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만이 생산과 관련된 위험의 공평한 분배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9)</sup>

6) Richtlinie 85/374/EWG Richtlinie des Rates vom 25. Juli 1985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ABl. EG Nr. L 210/29).

7) Richtlinie 1999/3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85/374/EWG des Rates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ABl. EG Nr. L 141/20).

8) Artikel 1: "Der Hersteller eines Produkts haftet für den Schaden, der durch einen Fehler dieses Produktes verursacht worden ist."

9) "Nur bei einer verschuldenunabhängigen Haftung des Herstellers kann das unserem Zeitalter fortschreitender Technisierung eigene Problem einer gerechten Zuweisung der mit der

EU의 지침은 그러나 EU의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국내의 입법화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 3. 독일

독일에서는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계약책임으로서는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로 구성하고, 신뢰책임설과 보증책임설 등으로 계약책임을 확대·의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은 닭페스트 사건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제공하였다.<sup>10)</sup> 이 판결을 통해 제조물책임은 계약상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었다. 불법행위책임법리에 의해서는 위험책임설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여 기계·기술적인 설비, 위험한 물질, 위험한 업무 등 의 위험원천으로부터 위험이 실현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위험원천의 점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의약품법, 원자력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수유형화한 제조자의 책임이나 특별법에 의해 책임을 엄격화하여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 나타나고, 입증책임의 전환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EU의 지침을 수용하여 특별법으로서 1989년에 제조물책임법<sup>11)</sup>이 제정되고,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외는 별도로 EU에서 제정된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지침(92/59/EG)에 따라 1997년에 제조물안전법(Produktsicherheitsgesetz)<sup>12)</sup>을 제정하였다.<sup>13)</sup>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란 완성품,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자를 말한다. 또한 자신의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통해 스스로 제조자로 표

---

modernen technischen Produktion verbundenen Risiken in sachgerechter Weise gelöst werden."

10) BGH vom 11. 26. 1968 VI ZR 212/66, BGHZ 51,91 = NJW 1969, S. 269ff.

11)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Produkthaftungsgesetz), BGBl. I S. 2198; zuletzt geändert durch das Zweite Schadensersatzrechtsänderungsgesetz vom 19. Juli 2002, BGBl. I S. 2674.

12)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v. 22. 4. 1977, BGBl. I S. 934; dazu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s. 13/3130.

13) 김재형,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84면.

시한 자도 제조자로 본다(제4조 제1항).<sup>14)</sup>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를 제조자로 보게 되지만,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청구의 도달 후 1개월 이내에 제조자나 자기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4조 제3항 1문).<sup>15)</sup>

#### 4. 일 본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이룸에 따라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학설과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또한 공해문제와의 연관성하에서 파악하였다. 이후 소비자보호와 위해방지의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이 일각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강력한 반대와 시기상조론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입법론이 대두되고, 결국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에 의회상정 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6)</sup>

#### 5.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학계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198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회에 제조물책임법안의 상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제조물책임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재정경제부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하였고,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sup>17)</sup> 제조물책임법은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

14) 그밖에 판매, 임대차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제조물을 EU조약의 적용지역에 수입하는 자도 제조자로 본다(제4조 제2항).

15) 수입물의 경우라면 제조사의 명칭을 알 수 있으나 수입업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찬가지이다(제4조 제3항 2문).

16)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치영,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43면 이하 참조.

17)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55-57면.

다(부칙 제2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와 안전의식의 제고라는 측면과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이 제시된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 기업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의 위축, 소송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노력의 저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18)</sup>

### I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 1. 제조물

##### 1) 대상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제조물이 유체물에 한하는지 혹은 무체물이라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무형의 에너지(전기, 음향, 광선 등)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9)</sup> 또한 중고품이나 수공업품 또는 예술작품 등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품특성 및 생산유통과정이 공산품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조물(예를 들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배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2)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제조”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이라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제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가공”이 있었는지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문제에서 해석상의 논란거리가

18) 권오승 · 신은주 · 홍명수 · 차성민 · 이현종, 제조물책임법, 28면 이하.

19)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58면.

될 수 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농민의 위험분산능력이나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농산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가 제시된다.<sup>20)</sup>

그러나 앞서 EU의 입법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미 법개정을 통해 농산물과 축산물에 법적용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근래에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버린 외국의 농산물이나 FTA를 통해 수입되는 축산물에 결함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2. 결 함

### 1) 의 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조자의 책임을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는 제조물의 결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상의 결함이나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에 관계된 사정을 고려해서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결함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에서는 변암변류기 폭발사건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가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sup>21)</sup> 이에 대해서는 종래 미국에서 논의되던 표준일탈기준(norm-deviation test),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 중에서 그 표현상으로 볼 때 소비자기대기준설을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sup>22)</sup>

### 2) 결함과 하자의 구분

20)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10면 참조.

2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22)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50면.

일반적으로 결함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등)에서 말하는 ‘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본다. 그리하여 판례에서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 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23)</sup>

즉 결함은 어떤 물건이 사용자의 신체, 다른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는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sup>24)</sup> 따라서 공급한 제조물 자체의 결함에서 발생한 가치의 감소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들 사이에서는 일반불법행위법의 적용으로 보호한다.<sup>25)</sup>

### 3) 유형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유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998년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Law Torts, Product Liability)에서 결함의 유형을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 및 부적절한 지시나 경고에 의한 결함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과 그 형식을 같이한다.

#### (1) 제조상의 결함

##### ① 의의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2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24)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234-235면.

25)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7면.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sup>26)</sup>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항 가목).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 2 (a)는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을 “제조물의 준비 및 판매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설계로부터의 일탈을 제조결함으로 정의함으로써 판례 및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른바 표준일탈 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을 인정한 것이다.<sup>27)</sup>

## ② 제조상결함의 내용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조에 필요한 재료, 기계, 작업방법 등의 배치를 해야 한다. 즉 제조자는 제조과정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물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는 이용되고 있는 설비나 기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제조절차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유통시키기 전에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결함제조물이 품질검사체계에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함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장난감 주사기로 인한 어린이의 상해사건에서 판례는 제조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던 교재용 또는 완구용 주사기는 주사침을 주사기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sup>28)</sup>

2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27) 즉 제조결함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으로 제품이 설계도나 시방서에서 제시된 것과 차이가 있게 제조됨으로써 설계도대로 제조된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위험한 경우를 말한다;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398면.

## (2) 설계상의 결함

### ① 의의

제조자는 제조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을 설계·계획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제조물의 결함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면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29)</sup>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제조물의 설계·기획과정 그 자체에 내재한 결함으로써 그 설계에 기해 제조된 제조물 모두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설계상의 결함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Recall)제도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제조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 ② 대체설계와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제2조 제2항 나목),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였다.<sup>30)</sup>

자동차 급발진사고 사건에서 원고는 급발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쉬프트 록(Shift Lock)<sup>31)</sup>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대체설계로서 주장

28)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72 판결.

2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3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31)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후)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된 쉬프트 록의 미장착과 설계상의 결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sup>32)</sup>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2 (b)는 “매도인, 기타 유통업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예전가능한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제조물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을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합리성기준(reasonableness test) 또는 위험효용형량(risk-utility balancing)을 채용한 결과라고 하며, 이를 채용한 이유는 사용자 및 소비자 모두로 하여금 제조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소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33)</sup>

### ③ 소비자 행동의 예전가능성과 설계상의 결함

제조자는 제조물을 설계할 제조자가 예전하는 용도나 상황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평균인에 의해 예전가능한 범위내의 사용 또는 소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위험성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자가 설계 내지 계획을 함에 있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제조물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 또는 무리한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2 (b)는 설계결합책임은 오용, 과용 등을 포함하여 그 사용이 제조물공급자가 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용이고 “예전할 수 있는 위험

3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쉬프트 록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켠 후 자동변속기의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이며, 또한 설령 쉬프트 록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자동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 급발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은 방지할 수 없어서 쉬프트 록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운전자가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요령만 숙지하여 실행하면 굳이 쉬프트 록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고예방효과가 있는데 자동차는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올바른 사용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기본사항인 점,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오조작을 감소시키려면 쉬프트 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점, 통계상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이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여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33)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398면.

(foreseeable risks)"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한다.<sup>34)</sup>

제조자는 소비자의 부주의한 사용을 예상하여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조물은 통상의 사용에 있어서 가능한 기대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위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도면이나 설계서대로 만들어진 제조물이 그 설계 자체에 기인하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의 세탁기 의사사건에 대한 판결<sup>35)</sup>에서 설계상 결함을 부정하여 제조물의 사용자가 설계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사용형태를 벗어난 사고에까지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시키지 않았다.

### (3) 표시상의 결함

#### ① 의의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항 다목). 이는 설계와 제조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방법이나

34) 그러나 제조물의 사용 자체는 예견할 수 있는 사용이라도 그 사용에 따른 위험은 예견할 수 없는 것인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는 사용의 예견가능성만 입증하면 되고 위험의 예견가능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399면.

3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42087 판결; "이 사건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세탁기에 인터록(INTERLOCK)장치와 차일드록(CHILDLOCK)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세탁기의 뚜껑이 열린 경우에 뜨거운 물이 쏟아짐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드럼식 세탁기와는 달리 이 사건 와권식 세탁기에는 도어안전장치나 안전걸쇠 및 잠금장치가 장착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포기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취급방법 또는 경고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결함이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2 (c)도 “매도인, 기타 유통업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예상가능한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같은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제조물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한 경우” 경고결함(warning defects)을 인정한다. 경고결함 또는 정보결함(information defects)은 합리성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며, 따라서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obvious and generally known risks)에 대하여는 지시·경고의 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조물의 위험이 명백하고 잘 알려진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가 경고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sup>36)</sup>

## ② 지시와 경고

제조물에 관한 표시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제조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표시에 포함되는 지시와 경고를 구별하여 보면 지시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효과적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경고는 제조물을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뜻과 그 위험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제조물의 제조나 유통에 관여한 자는 그 제조물에 대하여 설명이나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판매된 제조물은 그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함있는 제조물로 취급될 수 있다.

## ③ 표시상결함의 고려사항

36) 이점이 설계결함과의 차이이다. 설계결함에 있어서는 위험이 공연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결함이 성립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위험이 명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한 설계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조물의 사용자가 지시 또는 경고에 적절하게 따를 수 없거나, 지시 또는 경고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시 또는 경고를 따를 충분한 동기유발이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시나 경고는 합리적인 위험대처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설계의 채용이 가능하다면 설계에 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시 경고만으로 안전한 설계를 채용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399-400면.

판례에 따르면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한다.<sup>37)</sup>

따라서 어린이의 세탁기 의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세탁기 속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경우 위험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면 필요한 경고표시를 다 하였으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sup>38)</sup>

또한 헬기추락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조종사 교육 및 훈련과정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비행교범에 가능한 모든 상황이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승무원 실수에 대한 경고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고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39)</sup>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사건에서도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엔진시동 시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sup>40)</sup>

### 3. 결함의 입증과 결함의 추정

#### 1) 입증책임

판례에서는 제조자의 책임을 물기 위한 요소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는 통

3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3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42087 판결.

3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4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1)</sup>

이러한 사정을 만약 소비자가 증명하게 되면 반대의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측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판례에서는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단한다.<sup>42)</sup> 이는 공해소송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간접반증이론을 제조물책임에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sup>43)</sup>

## 2) 결함의 추정

단지 사고의 발생만을 입증하여서는 결함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결함의 존재가 그 사고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타의 발생원인을 배척 또는 부정하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sup>44)</sup>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3에 의하면 “당해 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통상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고, 피해의 원인이 원고 및 제3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보다 제조물의 결함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고, 그 제조물결함이 판매 또는 유통 당시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큰 경우 결함이 특성(specific nature)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의 피해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inferred)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4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43)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54면.

44)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245면 참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원고의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제조자가 공급한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원고의 피해사실과 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이때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며,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판단하에 닭사료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결함의 추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면 차량의 제조사의 결함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sup>45)</sup>

#### 4. 책임

##### 1) 책임의 주체

###### (1) 제조업자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가 된다(제2조 제3호 가목).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됨으로써 일반 소비자는 외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조물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 등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역시 제조물책임을 져야한다(제2조 제3호 나목). 나목의 규정을 통해 표현제조업자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제품의 제조자가 보통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그 상품의 광고를 위해 이러한 표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적 사실의 전제 아래, OEM 제품과 같이 상품의 실제 제조자와 상품에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가 상이하더라도 소비자는 후자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므로 당연히 표시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sup>46)</sup>

###### (2) 유통업자

만약 이러한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은 유통업자가

4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46)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7면.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리하여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제3조 제2항).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 1 (a)도 “제조물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seller or otherwise distributor)”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한다.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 5 (b)에 따르면 유통이란 “판매 이외의 상업적인 관계에서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또는 궁극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질 준비단계로써(as a preliminary step) 타인에게 제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의 상업적 제조물 유통업자에는 임대인(lessors), 위탁인(bailor) 및 제조물의 사용 또는 소비나 기타 상업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제조물을 제공한 자가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sup>47)</sup>

### (3) 연대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5조). 여기서의 연대책임은 민법 제760조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파악한다. 연대책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책임관여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 2) 책임의 내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47) 따라서 완제품 제조자만이 아니라 부품·원료 제조자, 표시제조자, 승계회사, 도매업자, 소매업자, 임대인, 위탁자, 제조물의 판매촉진자 등 제조물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모든 자가 제조물 책임의 책임주체가 된다;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레이트먼트, 400면.

상 손해배상범위의 판단에 있어 우선 인적손해 부분을 보면,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이며, 재산적 손해나 비재산적 손해가 모두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물적손해는 인적손해 이외에 물건에 생긴 손해이며, 다만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대하여만 생긴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합의 세가지 유형과 책임

설계상의 결합은 설계가 적용되는 모든 작업계열에서 제조되는 모든 제조물에 존재하지만 제조상의 결합은 개별 제조물에 존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제조상의 결합에 관하여는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48)</sup> 이는 미국법상의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설계상의 결합이나 표시상의 결합에는 결합에 대한 증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제조사나 전문가에 의해서도 결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설계상의 결합이나 표시상의 결합에는 엄격책임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한 듯 우리 법률상 설계상의 결합에 관하여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고, 표시상의 결합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판단된다.<sup>49)</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우리 법제에서 설계상 및 경고상의 결합에 과실을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sup>50)</sup>

### 4) 면책

48)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61면.

49)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61면.

50)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합의 개념과 입증책임, 575면.

### (1) 면책사유

#### ①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항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제4조 제1항 제1호)을 입증하는 경우에 면책된다. 따라서 제조자가 제조물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예컨대 제조물을 도난당하여 유통된 후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개발위험의 항변

둘째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이다(제4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 자칫 소비자가 시험용도구로 전락한다거나, 개발위험의 항변이란 세계최고 수준의 지식으로도 결함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므로 이를 판정하기가 극히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sup>51)</sup>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인간의 당시 기술수준에 의하여 당해 대체설계의 발견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편의성·효용·가격 등을 고려하여 상업상 현실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설계결함이 성립하며, 반대로 당해 대체설계가 당시 어떤 다른 제조자에 의하여도 채용된 적이 없고 심지어 산업에의 이용이 고려된 적조차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대체설계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채용이 가능하였음이 입증되면 설계결함은 성립한다.<sup>52)</sup>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과 관련하여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에는 개발위험이 이미 결함 유무의 판단에서 고려될 사항이므로 별도의 항변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특히 제조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원래의 의미

51)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15면.

52)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08면.

의 무과실책임 내지 업격책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어 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53)</sup>

### ③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셋째는 법령기준준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설”을 입증하는 경우이다(제4조 제1항 제3호). 만약 법적인 강제기준이 있고, 그 강제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생긴 때에는 제조자는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기준을 작성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sup>54)</sup>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특허 등의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계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허가 또는 특허 등의 행정행위는 행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이고, 제조물책임은 사법상의 문제로서 양자는 별개로 논의되기 때문이다.<sup>55)</sup>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 7 (b)에서도 “당해 제조물이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에 합치한 경우, 그 법률 또는 규칙이 감소시키고자 의도하였던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조물이 결함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적절히 고려된다. 그러나 법률상의 문제로서 반드시 제조물의 결함 발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 ④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항변

마지막으로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53)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64면.

54)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17면.

55) 홍천용,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결함, 130면.

이다(제4조 제1항 제4호). 원료공급자나 부품제조자는 자기가 공급하거나 제조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의 설계나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부품제조자는 면책되어야 한다.

### ⑤ 제조물감시의무

다만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이나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그리고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항변을 통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이는 독일에서 말하는 제조물감시의무(Produktbeobachtungspflicht)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6)</sup>

### (2) 면책특약의 제한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제조물책임법 제6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면책특약은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일반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 § 14에서도 “제조물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에 의한 구제의 배제(disclaimers) 및 제한(limitations), 매수인에 의한 권리의 포기(waivers) 및 기타 계약상의 면책(contractual exculpations)은 구두에 의한 것이든 서면에 의한 것이든 그러한 면책약속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유효하였을 인적 피해에 대한 신제품매도인 또는 그밖의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청구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 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면책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그 면책특약은 무효로 판단되지 아니한다(제6조 단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통상 사업자 사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와는 달리 상호간의 지위가 대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sup>57)</sup>

56)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65면.

제조물책임법상으로 면책약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 IV. 결 어

지금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과 내용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적용례를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제는 기술의 발전 및 대량생산이라는 현재의 생산체제에서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자 혹은 제조업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판매업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정은 산업계에서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제기했던 제조물책임법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비가 증가했다거나, 기업의 신기술개발 노력저해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을 악용한 소송남발은 미국과는 다른 법제를 가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제조한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법이론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제조물책임법제의 도입을 통해 일거에 해소한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이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행위법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차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국제적인 거래가 확대되고, 소비자 스스로의 보호의식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제품의 제조사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품질향상과 유통감독체계의 확립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이 많아지게 되면 그 중에는 결함을 가진 제품의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자국의 소비자보호

---

57)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67면.

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강화와 적극적인 적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외국의 제조자(혹은 국내의 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1970년대에는 기업 중심의 분위기에서 기업의 강력한 반대와 시기상조론으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지 않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수입제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자 본격적인 입법론이 대두된 점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 수입되어 오는 경우 그 제품의 제조국이나 원료 등에 대한 의심이 있고, 실제 결함이 드러난 경우 리콜(Recall)을 요청하거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착수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활동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제조물책임법제 고유의 법리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제조물책임법, 무과실책임, 결함,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소비자보호

### 참 고 문 헌

- 권오승 · 신은주 · 홍명수 · 차성민 · 이현종,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 김재형,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국제 · 지역연구 10권 3호, 2001.
- 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9호, 2004.
-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 판례연구 13집,  
부산판례연구회, 2002.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 법조 51권 7호(통권 550호),  
2002.
-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통권 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 이치영,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재산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5.
- 허경옥,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5호,  
1996.
- 홍천용,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결함, 경남법학, 1989.
- 허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통권 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 한봉희·이창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덕암 김병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Zusammenfassung]

## Das Produkthaftungsgesetz in der Rechtsprechung und der Verbraucherschutz

Sim, Jae-Han  
Professor, Yeungnam Univ.

Das koreanische Produkthaftungsgesetz ist am 1. 7. 2002 in Kraft getreten. Es gilt nicht für solche Produkte, die vor diesem Zeitpunkt in den Verkehr gebracht worden sind. Das Gesetz verpflichtet den Hersteller sowie den ihm Gleichgestellten zum Ersatz des Schadens, wenn durch einen Fehler seines Produktes ein Mensch getötet, verletzt oder eine Sache beschädigt wird. Das Produkthaftungsgesetz regel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für Schäden, die durch fehlerhafte Produkte verursacht worden sind. Für Sachschäden sind nur solche Schäden zu ersetzen, die nicht am fehlerhaften Produkt selbst entstanden sind, womit die Problematik der weiterfressenden Schäden angesprochen ist. Sodann muß die beschädigte Sache objektiv ihrer Art nach gewöhnlich für den Gebrauch bestimmt. Der Begriff des Fehlers ist Kernstück des Produkthaftungsrechtes. Ein Produkt ist fehlerhaft, wenn es nicht die Sicherheit bietet, die der Verbraucher erwarten darf. Das Gesetz regelt drei Fehlerkategorien: nämlich Fertigungsfehler, Konstruktionsfehler und Instruktionsfehler. Eine Haftung ist ausgeschlossen, wenn nach dem 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im Zeitpunkt, zu dem das Produkt auf den Markt gebracht wurde, der Fehler noch nicht erkennbar war. Die i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 Darlegungs- und Beweislast zugunsten des Geschädigten behält ihre Gültigkeit. Und der vom Zulieferer gelieferte Teil erweist sich als schädlich, wenn es nach ausdrücklicher Angabe des Endherstellers gefertigt worden ist, so trifft die Verantwortung allein den Hersteller des Endproduktes. Der Beitrag befaßt sich mit den Grundzügen der gesetzlichen

Regelung, soll aber gleichzeitig die Problematik aufzeigen, wie die Verbraucher weiter geschützt werden können.

Schlüsselwörter : Produkthaftungsgesetz,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Fehler, Fertigungsfehler, Konstruktionsfehler, Instruktionsfehler, Verbraucherschutz